

의안번호	2201828
의 퇴 인	한기호의원
회 답 일	2024.08.05.
추계번호	24D2050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2025~2028년 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33억 6,900만원(연평균 8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계	연평균
공로금총액	1,450	1,100	200	200	2,950	738
한국유격군총연합회	100	103	106	110	419	105
합계	1,550	1,203	306	310	3,369	8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2항 (공로금의 지급 신청)	공로금 지급신청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공로자 및 그 유족은 한국유격군총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제2항 (공로금의 지급 신청)	○	-
2	안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공로금 신청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신청자수는 「특수 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라 한국유격군총연합회에 대한 재정 지원의 경우, 한국유격군총연합회가 6·25참전유공자회 산하 직할회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에서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로금 지급신청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개정안에 따른 공로금 지급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표 2] 공로금 지급신청 및 심의기간

지급신청 기한	심의기간					소송제기
	심의	송달	재심의신청	재심의	송달	
법 시행후 6개월 이내	1년	1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2개월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만, 지급결정에 따른 소송, 공로금의 소멸시효가 지급결정서正本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2028년까지 4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공로금(안 제7조제2항)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로금 신청 대상자 1만 3,890명 중 4,820명이 신청하였으며, 미신청자 수는 9,070명임

[표 3]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단위: 명, %)

	신청현황			
	대상자수	신청자수	미신청자수	미신청률
합계	13,890	4,820	9,070	65.3

자료: 국방부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로금 신청자는 4,820명이며, 2024년 7월 20일 기준 3,956건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841건이 심의대기 중임

[표 4]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단위: 명, %)

신청자수	심의완료					심의대기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기타	인용률	소계	조사 완료	조사 진행	
4,820	3,956	3,466	470	20	87.6	841	93	748	23

자료: 국방부

- 개정안에 따라 공로금 지급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할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례의 경우 최초신청기간 동안 월평균 신청

자 수(287명) 대비 연장기간 동안 월평균 신청자 수(61명) 비율은 21.1%임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최초 신청기간 중 월평균 신청자 수 201명의 21.1%를 적용할 경우 연장기간 6개월 중 신청자 수는 254명으로 추정됨
- 현행법 시행기간 중 공로금 신청자의 인용률 87.6%를 적용하면 개정안에 따른 공로금 지급건수는 223건으로 추정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공로금 지급건수 추정

(단위: 명, %)

	특수임무수행자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최초 신청기간	연장기간	비율	최초 신청기간	연장기간	인용률	공로금 지급건수
기간	24개월	46개월	—	24개월	6개월	—	—
신청자 수	6,899	2,789	—	4,820	254	87.6	223
1개월 평균 신청자 수	287	61	21.1	201	42.2	—	—

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최초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2004.7.30.)로부터 1년이지만, 2006년 1차 개정 시 보상대상을 1995~2002년 사이 활동했던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하였기 때문에 최초신청기간을 24개월로 산정하였음

- 공로금 지급단가는 1인당 1,000만원임
- 현행법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기간에 유족 중 일부만 공로금 신청을 한 후, 지급신청기간 종료 후 미신청 유족이 공로금 지급신청을 한 사례 84건에 대해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현행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위원회 운영비는 2025년 2.7억원, 2026년 1.5억원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나, 개정안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될 경우 2026~2028년까지 매년 1억원씩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
 - 2025년 위원회 운영비는 현행법에 따른 운영비로 충당 가능한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

요는 2025~2028년 기간 동안 29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공로금 지급 재정소요 추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계
신규 신청자	수급자 수	103	100	10	10	223
	공로금 단가	10	10	10	10	
	공로금 지급액	1,030	1,000	100	100	2,230
미신청 유족	수급자 수	84	0	0	0	84
	공로금 단가	5	0	0	0	
	공로금 지급액	420	0	0	0	420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			100	100	100	300
합계		1,450	1,100	200	200	2,9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관련단체 재정지원 (안 제18조)

-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6·25 전쟁기간 비군인 신분의 유격대 등에 소속되어 참전한 유격대를 통합한 조직으로 유격군 총연합회와 17개 단위 유격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 회원수는 500여명(유격군 본인 300명, 유족회원 200명)임
-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6·25참전유공자회 산하 직할회 중 하나이지만, 6·25참전유공자회는 시·도 지부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어 직할회에는 운영비지원이 없음
- 추계에서는 한국유격군총연합회를 6·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2024년 기준 6·25참전유공자회 지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운영비 713만원, 인건비 8,580만원 등 총 9,292만원임

[표 7] 6·25참전유공자회 지부 지원 예산(2024)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운영비	인건비
지원 금액	92,917	7,128	85,789
산정 기준	—	594×12개월 ·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 · 공공요금 및 통신비	지부장 1,714×12개월 국장 1,668×12개월 과장 1,656×12개월 사원 1,650×12개월 퇴직충당금 557 보험료 4,976

자료: 국방부

-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인건비 등은 6·25참전유공자회 지부에 대한 지원 예산과 동일하게 4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 및 기관부담요율을 적용하고, 운영비는 6·25참전유공자회 지부에 대한 지원 예산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8] 한국유격군총연합회 지원예산 추계(2024)

(단위: 천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인건비 등	지부장	21,164	21,891	22,593	23,317
	국장	20,596	21,303	21,987	22,691
	과장	20,448	21,150	21,828	22,528
	사원	20,374	21,073	21,749	22,447
	퇴직급여충당금	573	593	612	631
	기관부담금	9,277	9,678	10,072	10,480
	소계	92,434	95,688	98,841	102,095
운영비		7,313	7,474	7,639	7,799
합계		99,747	103,162	106,480	109,894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2025~2028년 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33억 6,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계
공로금총액	1,450	1,100	200	200	2,950
한국유격군총연합회	100	103	106	110	419
합계	1,550	1,203	306	310	3,3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공로금 신청기간 연장 시, 추가신청자 수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례를 적용하고, 현행법 적용 기간 중의 인용률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추가신청자 수나 인용률 등의 변화에 따라 추계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